

의안번호	2209491
의 퇴 인	이수진의원
회 답 일	2025.6.13.
추계번호	25B20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삭 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삭 제>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14조의2(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1조(적용 범위)	—	• 미대상 －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 개정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안 제14조의2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상세 사유

- 현행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하며 4명 이하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구 분	적용법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자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현행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안 제11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안 제14조의2 신설) 내용임
 -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지원할 경우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확정하기 곤란하며, 개정안에 규정된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